



돼지콜레라 발생주의보

1998.12.29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343)467-1944

최근 11월과 12월 사이에 제주 및 충남 논산 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었으며 일부 양돈장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정보가 있어 이 병의 확산에 의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돼지콜레라 근절정책에 큰 차질이 예상되므로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돼지콜레라 발생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돼지콜레라는 콜레라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만성 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죽는 율이 90% 이상 매우 높아 일단 발생하면 양돈 농가에 막대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무서운 질병입니다. 현재 돼지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으로부터 인근 2 km이내의 농장 및 도축장은 최소한 40일 이상 수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웃 일본이 2000년까지 돼지콜레라를 근절하게 되면 국내 돼지 및 돼지고기가 일본으로의 수출이 2001년부터 전면 중단되게 됨으로 국내 양돈산업이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돼지콜레라 근절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청정화 선포를 할 예정으로, '98. 9. 5일자 농림부 고시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실시명령"을 제정하여 예방접종실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보다 1년 앞서 청정

화를 선포할 계획으로 '98년부터 백신접종을 금지시켜 청정화 작업을 확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질병임에도 노동력 부족 등을 이유로 표준예방접종프로그램에 따르지 않고 조기이유를 할 때 한번만 접종한다던가 또는 아예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가 많아 자기 뿐만 아니라 인근 양돈장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최근 IMF 사태 이후 부도난 양돈장의 돼지들이 헐값으로 여러 지역의 농장으로 이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육성자돈을 무책임하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돼지콜레라와 여러 가지 전염병의 전파확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돈농가에서는 믿을 수 있는 양돈장에서 돼지를 구입하여야 하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특히 신규 입식자돈에 대한 추가접종) 및 주기적인 소독실시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증상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모든 돼지는 일령에 관계없이 발병하나 발병후 체온이 40~41℃로 오르고 7~21일 후에 죽는 급성형과 열이 일정치 않고 20~30일 지나서 죽는 만성형이 있다.

○ 돼지가 떨면서 돈방의 한쪽 구석에 모여서 웅크리고 있다.

○ 처음에 열이 나고 사료를 거의 먹지 않으며 변비증상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물같은 설사를 한다.

○ 몸에는 붉은 색의 얼룩무늬가 생기고 특히 콧등, 귀, 복부 및 사타구니 등에 주로 많이 나타난다. 또한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끼며 기침을 종종 한다.

○ 뒷다리를 잘 쓰지 못하여 개처럼 앉아있는 자세(견좌자세)를 취하거나 또는 비틀거리는 신경증상을 나타내며 이러한 개체는 2~3일내에 죽게 된다.

○ 만성형 돼지콜레라의 경우에는 식욕결핍, 원기쇠약, 고열, 위축돈의 발생이 많으며 1~3개월 후에 죽게되는 것이 특징으로 급성형 돼지콜레라 증상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2. 예방대책

○ 새끼돼지를 구입할 때는 시장이나 중간 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양돈장에서 구입한 후 2~3주간 따로 사육하

〈표1〉 예방접종요령

구분	1차 접종	2차 접종
평상시	5~6주령	8~9주령
인근에 발생시	4~5주령	6~8주령
발생 양돈장	초유전 접종(신생자돈에 포유전 접종)	

면서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돈사내외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차량 및 외부인의 돈사출입을 제한하며 부득이 양돈장을 출입할 때는 소독을 철저히 한 다음 출입토록 합니다.

○ 관리인도 돈사 출입시에는 작업복과 작업화를 착용하고 반드시 소독한 다음 출입토록 하여야 합니다.

○ 사육중인 모든 돼지에는 반드시 다음 〈표1〉과 같이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종돈·번식돈 : 매년 1~2회 접종하며 모든 분만후 3주경에 주사하면 됩니다.

※ 일찍 젖을 떼 때(생후 20~25일령) 예방 접종할 경우 어미 돼지로 부터 받은 모체 이행 항체의 간섭현상으로 예방효과가 없습니다.

○ 예방접종은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구분없이 모두 귀뒷부분 또는 뒷다리 근육내에 예방약의 1ml씩 주사하면 됩니다.

※ 돼지콜레라는 백신을 제때에 정확하게 접종해 주면 예방이 가능하며 양돈장에서는 예방약의 보관(0~5℃)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돈**

〈질병문의 : 방역과 0343-467-1944, 병리진단과 0343-467-1747, 바이러스과 0343-467-1785〉

본지캠페인

**철저한 차단방역과 예방접종 강화로
돼지콜레라를 조속히 박멸합시다**